

2003년도 원양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오징어채낚기어업 감척 폐업 보상  
평가용역 보고서

2003. 09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 제 출 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

본 보고서를 「2003년도 원양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오징어 채낚기어업 감척 폐업 보상 평가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09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장

# 목 차

제 1 장	용역개요	1
제 2 장	조사대상 어업의 허가사항	3
제 3 장	조업실적	10
제 4 장	평균연간어획량	26
제 5 장	평균연간생산액	29
제 6 장	평년어업수익액	35
제 7 장	폐업지원금 산정	47
제 8 장	종합논의 및 결론	48
참고문헌		49

# 표 목 차

<표 2.1> 오징어 채낚기어업 감척대상 어업인의 인적사항 . . . . .	3
<표 2.2> 오징어 채낚기어업 감척대상 어업인의 허가사항 . . . . .	4
<표 2.3> 원양어업의 종류 . . . . .	5
<표 2.4> 채낚기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 . . . . .	5
<표 2.5> 어업허가의 취소사유와 제한기간 . . . . .	7
<표 2.6> 대상어업인의 허가어선 소유변동상황 . . . . .	8
<표 2.7> 대상어업인의 어선출입 근거지 . . . . .	9
<표 3.1-1> 제39동방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1999) . . . . .	13
<표 3.1-2> 제39동방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1) . . . . .	14
<표 3.1-3> 제39동방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2) . . . . .	15
<표 3.2-1> 제1서진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0) . . . . .	16
<표 3.2-2> 제1서진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1) . . . . .	17
<표 3.2-3> 제1서진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2) . . . . .	18
<표 3.3-1> 제88건양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0) . . . . .	19
<표 3.3-2> 제88건양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1) . . . . .	20
<표 3.3-3> 제88건양호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횟수(2002) . . . . .	21
<표 3.4> 대상어업인의 연도별 월별 어선출입항 기록 . . . . .	23
<표 3.5> 대상어업인의 연도별 유류 구입금액 통계 . . . . .	24
<표 3.6> 추정어획량과 세금계산서와의 비교 . . . . .	25
<표 4.1> 어업인별 확정어획량 . . . . .	27
<표 4.2> 원양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적당 평균어획량 추이 . . . . .	28
<표 5.1> 조사대상 선박의 규격별 판매물 조성 . . . . .	30
<표 5.2> 오징어의 최근 5년간 월별 판매단가 추이 . . . . .	32

<표 5.3> 조사대상 어업인 평균 연간 판매단가	33
<표 5.4>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균연간생산액	34
<표 6.1> 어업비용 항목의 분류기준	37
<표 6.2>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평균 총 경비율	40
<표 6.3> 제39동방호 평년어업수익 명세표	43
<표 6.4> 제1서진호 평년어업수익 명세표	44
<표 6.5> 제88건양호 평년어업수익 명세표	45
<표 6.6> 조사대상 어업인의 개인별 평년수익액	46
<표 7.1> 조사대상 어업인의 평년수익액 및 폐업지원금	47

# 제1장 용역 개요

## 1.1 목 적

해양수산부의 2003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오징어 채낚기 감척선박의 어업손실액(평년수익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적정한 어업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 1.2 조사범위

해양수산부가 조사 의뢰한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선 3척을 조사대상의 범위로 하며 대상선박의 개략적 제원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	선 명	총 톤수	마력수	건조일	비 고
동방수산	제39동방호	356.00	1,000	1969. 10	
상지수산	제1서진호	347.21	1,000	1970. 07	
부양어업	제88건양호	344.68	1,100	1970. 11	

## 1.3 보상액 산출범위

어업손실(폐업) 보상에 따른 평년어업 수익액의 3년 분을 개인별로 산출함.

## 1.4 조사방법

### 가. 어업실태조사

대상해역의 어업허가건별 지역적 어업의 특성과 조업실태 등에 대한 사실여부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어선의 관리대상 및 어업규모를 조사한다.

### 나. 생산량 조사

최근 3년 간의 어선별 생산량을 계통판매와 비 계통판매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계통판매는 수협이 위판 자료에 의거하고 비 계통판매는 어민의 진술자료에 의거하여 확인하되 월별조업일수, 출어일당 생산량, 연간생산량의 월별분포와 어가, 어획물조성비

를 조사하여 어업별·톤별 연간생산량과 생산액을 추정한다.

#### 다. 판매단가 조사

평균연간판매단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Ⅱ.1.나에 따라 산출한다.

#### 라. 어업경비조사

수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어업경비 항목에 대해 어업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현장조사 또는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어선별 어업경비를 추정한다.

#### 마. 어선별 손실액 산출 및 손실액 평가

1) 「가」, 「나」, 「다」 및 「라」 항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어선별 연간수익을 계산하여 어업보상액을 산출한다. 이상의 조사에 있어서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기 조사된 자료나 문헌 및 인근해역의 동 종·동 규모 선박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완한다.

2)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4)에 따라 산출하되 3년 이상과 미만의 어업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1.5 조사기간

2003. 07. 28 - 2003. 09. 27 (2개월간)

### 1.6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교수   김종화 (공학박사)
- 연구원       강사   이종근(법학박사)
- 연구조원     선박직원   홍장표(수산학석사)

## 제2장 조사대상 어업의 허가사항

### 2.1 서론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의뢰한 2003 원양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감척 폐업 보상의 조사대상 어선은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선 3척이다.

본 연구는 이들 대상어선에 대하여 어업인과 어업허가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한 것이다.

### 2.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원양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지원사업의 감척 선박으로 선정된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기본자료로 하여 수행하였다.

### 2.3 결과 및 논의

#### 2.3.1. 인적사항

감척 선박 폐업보상을 신청한 3명의 어업인에 관한 인적사항은 <표 2.1>과 같다. <표 2.1>에 의한 사업자 선정 신청 어업인의 거주지, 성별 및 연령분포를 보면 3명 전부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어업인이다. 그리고 3명 모두 남자이고, 연령분포를 보면 40대가 1명이고 50대가 2명이다.

<표 2.1> 오징어 채낚기 어업 감척선박 대상 어업인의 인적사항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업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비고
1	윤학수	제39동방호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업	580829-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2번지 조흥은행 6층	051)246-9350 Fx)243-4532	
2	장지선	제1서진호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업	480130-	부산시 중구 남포동 6가 3번지 신천지 빌딩 619-A	051)255-7307 Fx)255-7288	
3	정두열	제88건양호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업	480505-	부산시 서구 충무동 1가 23번지 태평빌딩 A동 338호	051)242-1032 Fx)243-7565	

\* 업종은 어업허가장 상의 어업 종류를 나타낸 것임.

### 2.3.2. 어업허가사항

감척선박 폐업보상 신청어업인이 영위하는 어업허가 사항에 관한 개요는 <표 2.2>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2.2> 오징어 채낚기어업 감척선박 대상 어업인의 어업허가 사항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톤수	어업종류	어업명칭	조업구역	어업시기	허가기간	포획대상어종	비고
1	윤학수	제39동방호	356.00	원양채낚기어업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	태평양대서양	1.1-12.31	2001.10.04-2006.10.03	오징어류	
2	장지선	제1서진호	347.21	원양채낚기어업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	태평양대서양	1.1-12.31	2003.04.17-2008.04.16	오징어류	
3	정두열	제88건양호	344.68	원양채낚기어업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	태평양대서양	1.1-12.31	2003.07.10-2007.07.09	오징어류	

#### 가. 허가업종

수산업법 (개정 2002. 02. 04, 법률 제06656호)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양어업이란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해외수역이란 동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해외수역”이라 함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해상종묘생산어업의 생산 종묘의 종류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2003. 7. 15, 대통령령 제18052호) 제26조에는 원양어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2.3> 원양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사용어구	포획생물	기타
원양연승어업	동력어선	주낙	수산동물	
원양기선저인망어업	동력어선	저인망	수산동물	
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	망구 전개판을 사용한 인망	수산동물	
원양선망어업	동력어선	선망	수산동물	
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	수산동물	
원양봉수망어업	동력어선	봉수망	수산동물	
원양채낚기어업	동력어선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	수산동물	
원양통발어업	동력어선	통발	수산동물	
원양모선식어업	냉동·가공설비 기타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	-	수산동물	
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	안강망	수산동물	

또한,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에서 원양채낚기어업은 <표 2.4>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2.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척대상으로 신청한 원양채낚기어업의 어선은 총톤수가 구톤수 80톤, 신통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 2.2>에 제시된 감척대상 신청어선은 모두 <표 2.3>과 <표 2.4>에 제시된 어선규모에 합당하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신청어업자 모두가 실제 조업업종이 허가업종과 일치하였다.

<표 2.4> 채낚기어업의 명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제 2항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선의 규모		기관 마력	부속선				비고
		구톤수	톤 수		종류	척수	구톤수	톤수	
원양채낚기어업	원양채낚기업	80톤이상	60톤이상	-	-	-	-	-	

\*비고 : 구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 개정법률 부칙 제 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 나. 조업구역

원양어업의 조업구역에 대하여서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02. 09. 02, 해양수산부령 제232호) 제14조에서 행정관청이 수산업법 제 45조 제 1항의 규정으로 준용되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시에 부가하는 제한 및 조건이 있다.

그러나,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용역의 대상인 포클랜드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는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선에 도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없다.

#### 다. 어업시기

신청 대상어업자의 어업시기는 <표 2.2>에서처럼 모두 1.1 - 12.31까지로 어업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다. 어업시기와 관련하여 원양어업에 부과되는 어업조건은 없다.

#### 라. 허가기간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수산업법 제43조)이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평균 연간어획량을 어업보상액의 산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평균 연간어획량은 3년 이상의 어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의 평균 어획량으로 산출하고, 3년 이상의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출한 추정 평균 어획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62조 별표 4.Ⅱ.1에서 손실액 (보상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 연간 어획량을 평균연간 판매 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 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최근 3년을 기산하는 시점은 폐업 보상을 신청하여 관계 관청이 대상 어업자를 확정하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해 산출된 손실액을 조사토록 의뢰한 시기를 뜻하며, 이 경우 최근 3년은 2000~2002년으로 본다. 다만, 수산업법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당해 취소 어법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당해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12조) <표 2.5>와 같다.

<표 2.5> 어업허가의 취소사유와 제한기간(제12조 1항 관련. 개정 99.3.17)

허가취소의 사유	허가의 제한기간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1년
2.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때	1년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1년
4. 북한에 나포 또는 역류되거나 어로 한계선을 월선 한 때	1년
5. 조업자제선을 월선한 때	6월
6. 사전 신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월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월
8. 기타 어법,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5월 (원양 어업의 경우에는 3월)
비고 :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기간은 원양어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마. 사용어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는 허가된 어업에서 사용하여 왔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에 어업허가 자체를 신규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어선과 어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어선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원양채낚기어업의 감척 선박으로 신청한 어업자의 어업허가증에 허가된 사용어선과 실제 조업시에 사용하는 어선을 확인한 결과, 모든 어업자가 허가상에 명시된 어선과 실제 조업시에 사용하는 어선이 일치하였다.

본 용역조사에서 어업실적조사의 대상 연도인 2000년 1월 이후 현재 (2003. 09)에 이르기까지 조사대상 어업인의 어선소유에 관한 변동상황은 없었다(<표 2.6>).

<표 2.6> 대상어업인의 허가 어선 소유변동 상황

연 번	어업 인명	어선명	어선소유변동내용	실제 조업자	비고
1	윤학수	제39동방호	69. 10 ~ 79. 8.13 : 일본인 소유 79. 8.14 ~ 88. 4.11 : 동방원양개발공사 88. 4.12 ~ 현 재 : 동방수산	좌 동	
2	장지선	제1서진호	70. 07 ~ 80. 11.21 : 일본인 소유 80. 11.22 ~ 85. 06.18 : 인도양교역(주) 85.06.19 ~ 96.01.28 : 풍산수산(주) 96.01.29 ~ 97.06.23 : 범창산업(주) 97.06.24 ~ 현 재 : 상지수산	좌 동	
3	정두열	제88건양호	70. 11 ~ 79.06.13 : 일본인 소유 79.06.14 ~ 86.03.20 : 신영어업(주) 86.03.21 ~ 91.11.04 : 남해공업(주) 91.11.05 ~ 현 재 : 부양어업(주)	좌 동	

\* 어선소유변동내역은 어선원부에 기재된 사항임.

#### 바. 채포물

원양어업에서는 채포대상 어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즉 <표 2.2>와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업허가증에 명시된 채포물의 종류는 어획대상 생물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외의 어종은 채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 보호령 제1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된 채포물 외의 수산 동식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동 보호령 제30조 제3호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용역 조사 대상인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동 보호령 제 18조에 의거하여 이들 어업의 채포물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오징어 채낚기어업에서는 오징어 이외의 다른 어류는 거의 포획되지 않는다.

#### 사. 양륙항

어획물의 양륙항의 제한은 수산자원 보호령 제4조~21조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 9. 30 개정에서 이들 조항은 모두 삭제 되었다.

본 용역조사에서 어업인들의 어획물 양륙항은 어업허가증에서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조업 어장에서 바로 수출하거나 운반선 또는 본선을 통하여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주로 양륙되었다(<표 2.7>).

<표 2.7> 대상어업인의 어선출입 근거지

연번	어업인명	허가사항				양륙항	선적항	주출입항
		업종	사용어선					
			어선명	톤수	마력			
1	윤학수	원양 채낚기어업	제39동방호	356.00	1,000	-	부 산 광역시	
2	장지선	원양 채낚기어업	제1서진호	347.21	1,000	-	부 산 광역시	
3	정두열	원양 채낚기어업	제88건양호	344.68	1,100	-	부 산 광역시	

아.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수산업법 제12조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허가어업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는 행정관청이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 부가하는 제한 및 조건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어업인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관련되는 제한 조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2.4 요약 및 결론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척선박 폐업보상 신청 어업인 3명의 인적사항은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고, 이들 3명의 어업에 대해 허가사항과 어선의 규모 등의 기준, 제한기간, 소유변동 상황 및 어선출입 근거지는 <표 2.2>~<표 2.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제3장 조업실적

### 3.1 서론

본 연구는 어업처분에 따른 손실액 평가에 있어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 II.1의 평균 연간어획량을 추정하는 기본자료가 되는 출어 실적, 유류소모량, 종합소득 금액, 각 연도별 원양어획물 반입 신고 확인서 및 기타 자료를 조사대상 어업인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이다. 여기서 출어 실적이란 기항항을 출항하여 입항하기까지의 경과 일수를 말하고, 유류소모량이란 대상 연도별 각 어업인의 유류 구입실적을 말하고, 종합소득금액이란 대상 연도별 어획물 판매금액을 말한다.

### 3.2 자료 및 방법

#### 3.2.1 출어실적

허가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총톤수 100톤 미만인 선박의 경우에 선박안전 조업규칙 (개정 2000. 8. 9, 해양수산부령 제172호)에 의해 출입항시에는 항, 포구에 설치된 어선출입항신고소에 소정의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원양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된다. 본 연구의 대상 어선은 전부 원양어선이므로 출입항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선박의 선적항 및 외국의 기항항의 관할 관청에 의해 확인된 선박별 최근 3년간(2000~2002)의 외항선 출입항 신고서 사본을 근거하여 출어 실적을 파악하였다.

출어 실적은 출어 일수로 평가하였다. 출어 일수는 당일 출항 당일 입항을 1단위로 하여 출항일과 입항일간의 경과일수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어선의 출항일자와 입항일자 간의 기간이 전적으로 해당어선이 조업어장에만 체류하면서 어로 작업만을 한 기간인 지는 외항선 출입항 신고 기록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 3.2.2 유류소모량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는 동력어선은 해상용 및 육상용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그 연료로는 일반적으로 벙커A (B/A) 및 경유를 사용한다. 공급되는 유류의 종류에는 연료인 B/A 및 경유 이외에도 윤활유 및 조연제 등 6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어업인의 유류 구입실적, 특히 소량 소비되는 윤활유나 조연제 등을 포함한 B/A 및 경유 등의 연료유 구입실적을 연도별로 산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의

조업활동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본 항의 조사목적은 최근 3년간의 유류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므로 조사대상 모든 어업인에게 2000 ~ 2002년의 3개년에 대한 유류구입 실적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 3.2.3 기타 자료

각 대상 어업인별로 연도별 거래된 각종 어획물 판매증빙서류,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선원 정산서 및 재무제표, 경비 지출 내역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조업실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어획량 자료로 이용 가능한 판매자료는 어획물의 양륙항 및 판매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 어업자는 양륙항 및 판매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매매할 수 있다.

실제로 대상 어업인들은 어장에서 운반선을 통하여 직접 수출을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 비계통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 방법이라고 한다. 본 항의 유통경로에 대한 조사는 어업인들이 제출한 판매증빙자료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 3.3 결과 및 논의

### 3.3.1 판매물량 및 유통경로

대상 어업인들이 제출한 어획물 판매증빙자료에는 몇 가지가 있으나 판매물량, 판매단가가 상세하게 기입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획물의 판매물량 및 유통경로 등의 판매형태를 알 수 있다.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3년간에 걸친 어획물 판매 실적은 어선별로 <표 3.1-1> ~ <표 3.3-3>에 나타내었다.

연번 1번(제39동방호)는 2000년에는 기관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1년간 소급하여 1999년의 어획실적을 사용하였다. 연번 1번 자료를 정리하면 <표 3.1-1>~<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3년간 총 판매물량은 6,527톤, 판매금액은 6,115,253천 원이었고, 연 평균 판매물량은 2,175톤이었다. 판매는 상반기에는 주로 수출용인 소형오징어를 중심으로 판매하였고, 대형어는 대부분 하반기에 판매하였다. 월별 판매횟수를 보면 5~8월에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제39동방호는 익년 11월에 출어하여 어선은 어장에서 조업 중이

지만 운반선을 통하여 어획물량을 운반하여 3월부터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번 2번(제1서진호)은 <표 3.2-1>~<표 3.2-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3년동안 판매 물량은 총6,684톤, 판매금액은 5,549,425천 원이었다. 연 평균판매물량은 2,228톤이었다. 판매시기는 3년 모두 연중 내내 판매하였으나, 5월에서 9월까지 가장 많이 판매하였다. 따라서, 제1서진호는 어획물량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가격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번 3번(제88건양호)은 <표 3.3-1>~<표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동안 판매물량은 총6,820톤, 판매금액 6,563,403천 원이었다. 연 평균판매물량은 2,273톤이었다. 판매시기는 거의 연중 내내 판매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수출오징어나 소형오징어를 주로 판매하고, 하반기 특히 연말에 대형오징어를 집중적으로 판매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3척 중 연번 3번(제88건양호)의 판매물량 및 판매대금이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이 연번 2번(제1서진호), 연번 1번(제39동방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번 1번은 2000년도에 조업을 하지 못하여 1999년도 판매물량과 판매대금을 정리하여 기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어업인들 중 최하위였다.

<표 3.1-1> 제39동방호(윤학수)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횡수현황(1999년도.)  
(단위 : kg, 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 량	금 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1	1												
	2												
	3												
	4												
	5	860	1	23,890	7	98,350	14	229,900	24	101,400 (24,200)		454,400	373,118
	6			18,500	2	12,600	4	359,100	12	113,590	5	503,790	356,470
	7					105,570	4	57,500 (24,200)	5			163,070	125,287
	8	46,660	2	1,800	1	5,400	1			7,800	1	61,660	70,445
	9					10,800	4			27,750 (27,750)	1	38,550	31,868
	10							16,950 (16,950)	1	231,610 (231,610)	3	248,560	199,978
	11			5,400	2			111,880 (104,680)	5			117,280	91,010
	12			1,164,040	9	657,700	147	119,710 (79,600)	12	93,260 (85,630)	14	2,034,710	1,679,403
	계	47,520	3	1,213,630	21	890,420	174	895,040	59	575,410	24	3,622,020	2,927,579

( )은 수출량임.

<표 3.1.-2> 제39동방호(윤학수)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횃수현황(2001년도)

(단위 : kg, 천원)

연번	월	오 정 어 규 격										누계	
		2L		L		M		M2		S		수 량	금 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1	1												
	2												
	3									220,010 (220,010)	2	220,010 143,631	
	4												
	5							110,270	2	2,630	1	112,900 97,215	
	6			33,230 (33,228)	1	354,980 (354,976)	2			26,260 (19,160)	2	414,470 406,928	
	7					207,950 (196,370)	2	58,300	2	4,180	1	270,430 452,370	
	8	12,210	3	76,860	4					49,270	4	138,340 171,533	
	9	56,900	4	75,330	4			3,600	2	1,260	1	137,090 168,533	
	10					78,000	3					78,000 86,660	
	11			15,210	1	59,510	1					74,720 82,451	
	12					129,220	1	218,210	1	1,300	2	348,730 300,850	
계	69,110	7	200,630	10	829,660	9	390,380	7	304,910	13	1,794,690 1,910,171		

( )은 수출량임.

<표 3.1-3> 제39동방호(윤학수)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횃수현황(2002년도)

(단위 : kg, 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량	금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1	1												
	2												
	3							213,030 (213,030)	2			213,030	213,927
	4									189,430 (189,430)	1	189,430	122,927
	5							16,420	1	213,350 (213,970)	2	229,770	121,071
	6			590	1	520	1	166,300	5			167,410	225,530
	7					51,950	1	2,720	1	1,870	1	56,540	80,633
	8					5,690	2	94,450	1	4,950	2	105,090	87,086
	9	4,500	1	3,600	1							8,100	14,700
	10	9,000	1	9,070	1							18,070	32,374
	11	15,820	1									15,820	29,007
	12	50,400	4	52,670	6	3,960	2					107,030	350,248
	계	79,720	7	65,930	9	62,120	6	492,920	10	409,600	6	1,110,290	1,277,503

( )은 수출량임.

<표 3.2-1> 제1서진호(장지선)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횃수현황(2000년도)

(단위 : kg, 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 량	금 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2	1												
	2							372,000 (372,000)	1			372,000	206,670
	3												
	4									315,000 (315,000)	1	315,000	112,000
	5			136,570	6	9,360	7	7,740	5	78,930 (78,930)	2	232,600	169,407
	6			359,680	7	40,320	10	76,120	4	493,970 (115,000)	2	970,090	594,451
	7	18,430	1	215,550	6	419,340	4	285,000	3	1,380	1	939,700	756,782
	8					10,800	1					10,800	9,300
	9	8,650	3	2,700	2	19,800	3			65,160	1	96,310	33,061
	10	1,800	1			16,200						18,000	20,628
	11	23,400	4									23,400	33,180
	12			1,800	1							1,800	1,850
	계	52,280	9	716,300	22	515,820	25	740,860	13	954,440	7	2,979,700	1,937,329

( )은 수출량임.

<표 3.2-2> 제1서진호(장지선)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횃수현황(2001년도)  
(단위 : kg, 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량	금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2	1												
	2					305,000 (305,000)	1					305,000	189,398
	3	177,490	1			59,600 (59,600)	1			311,090 (311,090)	1	548,180	350,536
	4					105,000 (105,000)	1					105,000	135,557
	5	232,690	1	2,020	1	80,060	3	57,770	2	301,530 (301,530)	5	674,070	699,560
	6	201,600	1					7,900	1			209,500	283,619
	7												
	8	45,770	3	104,710	4	23,910	3					174,390	215,561
	9	196,070	2									196,070	267,184
	10												
	11												
	12												
	계	853,620	8	106,730	5	573,570	9	65,670	3	612,620	6	2,212,210	2,141,415

( )은 수출량임.

<표 3.2-3> 제1서진호(장지선)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횃수현황(2002년도)

(단위 : kg, 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 량	금 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2	1												
	2												
	3					50,150	4			216,850 (216,850)	4	267,000 198,825	
	4					33,050	2			325,530 325,530)	3	358,580 189,325	
	5	31,660	3	4,460	2	15,730	2	5,720	3	272,800 (160,000)	7	330,370 328,514	
	6												
	7	67,280	1	27,940	4	82,100	11	37,190	10	35,300	6	249,810 378,538	
	8	6,170	1			12,890	3	13,520	2	3,650	2	36,230 48,376	
	9	65,700	16									65,700 122,090	
	10	11,740	2			900	1					12,640 23,368	
	11			1,800	1	15,750	2					17,550 24,200	
	12			31,950	2					122,440	5	154,390 157,445	
	계	182,550	23	66,150	9	210,570	25	56,430	15	976,570	27	1,492,270 1,470,681	

( )은 수출량임.

<표 3.3-1> 제88건양호(정두열)의 월별 판매금액 및 판매횃수 현황(2000년도)  
(단위 : kg,천원)

연번	월	오징어 규격										누계	
		2L		L		M		M2		S		수 량	금 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3	1	8,640	5			96,120	13					104,760	86,552
	2			4,860	2	79,630	30	39,360 (39,360)	2	251,080 (251,080)	6	374,930	347,090
	3			3,240	3	1,690	2	149,980 (149,980)	2	1,960	2	156,870	143,925
	4			23,760	5							23,760	18,810
	5	2,230	2	126,540	27	18,000	2	323,930	11	900	1	471,600	823,655
	6	760	1	79,070	11	145,980	5	209,830	20	900	1	436,540	229,992
	7	200	1	64,040	3	99,270	3	255,830	7	990	1	420,330	330,015
	8	900	1	142,810	3							143,710	139,870
	9			3,600	3	4,210	1	1,800	1			9,610	9,328
	10			61,740	8							61,740	63,835
	11	73,130	5	278,460	11							351,590	356,504
	12	53,870	5							1,100	1	54,970	57,300
계	139,730	20	788,120	76	444,900	56	980,730	43	256,930	12	2,610,410	2,606,876	

( )은 수출량임.

<표 3.3-2> 제88건양호(정두열)의 월별 판매금액 및 판매횃수 현황(2001년도)  
(단위 : kg,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량	금액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수량	횃수		
3	1					21,530	1			112,130 (112,130)	1	133,660	77,793
	2							66,480 (66,480)	1	313,216 (313,216)	3	379,696	192,370
	3							45,160	1	89,290	1	134,450	67,360
	4							44,350	1	81,000	1	125,350	59,063
	5			9,430	1	144,580	1	162,830	1	540	1	317,380	323,598
	6			9,720	2	388,800	2	207,000	2	1,300	2	606,820	638,608
	7			7,220	2	170,640	8	132,070	1	500	2	310,430	329,400
	8	162,900	6	1,800	1	60,370	5	4,300	1	3,600	2	232,970	293,054
	9	77,440	7	70,940	8	225,720	12			1,800	1	375,900	419,391
	10	32,400	13	1,800	1							34,200	46,110
	11	61,850	17							97,850	1	159,700	138,360
	12												
계	334,590	43	100,910	15	1,011,640	29	662,190	8	701,226	15	2,810,556	2,585,107	

( )은 수출량임.

<표 3.3-3> 제88건양호(정두열)의 월별 판매금액 및 횃수현황(2002년도)  
(단위 : kg,천원)

연번	월	오징어규격										누계		
		2L		L		M		M2		S		수량	금액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3	1													
	2									221,150 (221,150)	2	221,150	148,744	
	3									367,730 (367,730)	2	367,730	197,941	
	4									49,930 (49,930)	1	49,930	24,965	
	5													
	6							134,070 (134,070)	2				134,070	92,930
	7			1,150	1	4,300	2	54,890 (39,270)	9	7,560	1	67,900	58,672	
8	3,850	1	900	1	48,370	1	52,560	1				105,680	122,362	
9	121,500	5	9,000	3								130,500	237,705	
10	14,360	5	37,600	6	630	1	1,800	2				54,390	94,386	
11			12,600	6			1,800	1	61,240	1	75,640	78,817		
12	38,400	3	140,810	10			11,360	7	1,800	3	192,370	314,898		
계	178,110	14	202,060	27	53,300	4	256,480	22	709,410	10	1,399,360	1,371,420		

( )은 수출량임.

### 3.3.2 검증자료

대상 선박의 조업 성실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어획량 추정의 검증자료로 활

용코자 하였다.

### 가. 출어실적

조사대상 어업인들이 3개년에 걸쳐 외항선 출입항 신고기록 및 외국에서의 출입항 기록을 어업인별, 월별, 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4>와 같다. 그러나, 연번 1번(제39동방호)은 기관의 수리 등으로 휴업하였기 때문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II.에 의거하여 199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 어업인들은 주로 포클랜드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였으며, 대개 1월에 출어하여 7월에 포클랜드의 몬테비데오 항구로 귀항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수리를 위하여 비어기인 8월경에 입항하여 11월 말경에 다시 포클랜드 어장으로 출항하였다. 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포클랜드의 몬테비데오항에서 정비 등을 한 후 다음 어기에 바로 출항하였다. 3년간 조업일수를 평균하면 대체로 연간 209 ~ 236일간 출어하였다. 3척 중 출어일수가 가장 적은 선박은 제39동방호(209일)이었고, 가장 많은 선박은 제88건양호(236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포클랜드 어장에 출어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평균 일일어획량이 주어진다면 이들의 실제 어획량 추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어업인의 연도별 월별 어선출입항 기록 (자료 출처: 외항선 출입항 신고)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연도·월별 출입항일수												계	
			월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윤학수	제39동방호	99	31	29	31	30	31	30	31	08	-	-	-	-	221
			01	31	28	31	30	31	30	31	11	-	-	-	-	223
			02	31	28	31	30	31	14	-	-	-	-	-	17	182
			총계													626
2	장지선	제1서진호	00	31	29	31	30	31	30	31	31	22	-	10	31	307
			01	31	28	31	30	31	30	06	-	-	-	-	11	198
			02	31	28	31	30	31	24	-	-	-	-	-	10	185
			총계													690
3	정두열	제88건양호	00	31	29	31	30	31	30	31	14	-	-	12	31	270
			01	31	28	31	30	31	30	05	-	-	-	-	27	213
			02	31	28	31	30	31	30	03	-	-	-	09	31	224
			총계													707

## 나. 유류소모량

<표 3.5>에서는 어업인들의 연도별 유류 소모량을 금액으로 나타내었다. 연번 1번(제39동방호)은 톤수, 마력이 다른 2척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유류 소모량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 2002년도는 연번 2번과 연번 3번에 비하여 거의 2배에 가깝게 연료를 소모하였다. 수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기항함으로써 유류 소모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번 1번은 어획량 추정과 어업의 직접적 경비지출 측면에서 볼 때, 성실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 조사대상어업인의 연도별 유류 구입금액 통계

(단위: 천원)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톤수	마력	연도별 연료유 구입금액			평 균	비고
					2000	2001	2002		
1	윤학수	제39동방호	356.00	1,000	175,868	276,007	282,896	244,924	
2	장지선	제1서진호	347.21	1,000	279,824	211,961	151,608	214,464	
3	정두열	제88건양호	344.68	1,100	213,331	266,394	165,412	215,046	

\* 연번 1의 2000년은 1999년도를 의미함.

#### 다. 기타 자료

각 선박의 연도별 어획물 판매 증빙서류,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서, 수출물량, 기타 자료로서 수출면허장, 어로경비항목, 정산내역서, 재무제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획량 추정과 성실 조업을 검증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표 3.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각종 경비내역서, 임금 지급 명세서 및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서 등으로 이어지는 ‘추정어획량(A)’과 첨부된 ‘세금계산서(B)’의 판매물량과는 거의 같은 경우도 있었으나 다소 차이를 보이는 어선도 있었다. <표 3.6>에서는 어업자들이 제출한 연도별 어획량과 계산한 어획량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연번 2번(제1서진호)은 신고어획량이 계산 어획량의 93%, 연번 3번(제88건양호)는 97%로 신고어획량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연번 1번(제39동방호)는 신고어획량이 계산어획량의 86%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비교적 낮았다. 즉 추정어획량은 국내 반입신고서와 수출물량 및 선원 정산내역서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어획량에 아주 근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로 어획량을 산정한다면 추정어획량이 세금계산서상의 판매물량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6> 추정어획량과 세금계산서 판매량의 비교

(단위 : 톤)

연번	어선명	년 도	추정어획량(A)	세금계산서(B)	A/B(%)
1	제39동방호	00	2,873(659)	3,621	79%
		01	1,827(1,021)	1,795	102%
		02	918(358)	1,110	82%
		<b>평 균</b>	<b>1,873</b>	<b>2,176</b>	<b>86%</b>
2	제1서진호	00	2,654(1,136)	2,980	89%
		01	2,105(1,086)	2,212	95%
		02	1,429(782)	1,492	96%
		<b>평 균</b>	<b>2,063</b>	<b>2,228</b>	<b>93%</b>
3	제88건양호	00	2,871(957)	2,610	110%
		01	2,357(633)	2,811	84%
		02	1,399(756)	1,399	100%
		<b>평 균</b>	<b>2,209</b>	<b>2,273</b>	<b>97%</b>

### 3.4 요약

각 어업자별 조업실적은 <표 3.6>에 나타낸 바와 같다.

## 제4장 평균연간어획량

## 4.1 서론

본 연구는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 구조조정 사업대상 어업인에 대해 취할 어업 취소 처분을 위한 손실액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서 평균 연간어획량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된 것이다. 여기서, 평균연간어획량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Ⅱ에 규정된 평균연간어획량을 말한다.

## 4.2 자료 및 방법

수산업법 제81조에 의하면 동법 제41조에 의한 허가어업을 행하는 자가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법 제35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어업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1조(보상의 청구)에 따라 어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번호·처분사항과 그 일자·손실의 내용·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4.Ⅱ에는 동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연간어획량을 두 가지 경우를 두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3년 이상의 어업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최근 3년간의 평균어획량이 평균연간어획량이다. 둘째는 3년 이상의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산식에 따라 적정 평균어획량을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 어업자는 모두 3년 이상의 어업실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근해어업은 선어 형태로 소속 수협을 통하여 위판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조업 해상에서 바로 수출하거나, 냉동 운반선을 이용하여 육상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매매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대상 어업인들도 이와 같이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 어업인들의 어업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연간어획량은 원양 어업협회의 자료, 어획물 반입 확인서, 수출 증빙 서류, 세무서 신고용 세금계산서 또는 어업인 제출 증빙자료 내역 및 수산과학원 어획량 보고자료 등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본 조사대상 어업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어업실적자료가 미비한 연근해어업과는 달리 어획량 및 판매액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비교적 소상히 갖추고 있었고, 자료의 신뢰성도 상당히 높았다.

### 4.3 결과 및 논의

이상의 자료에서 얻어진 어업인별 어획량을 종합하여 평균 연간 어획량으로 환산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 선박의 평균 연간 어획량 추정

(단위 : 톤)

연번	어선명	년 도	추정어획량 (A)	원협보고량 (C)	수산과학원 보고량(D)	평균연간어획량 ((A+C)/2)
1	제39동방호	99	2,873	2,927	-	1,903
		01	1,827	1,977	1,238	
		02	918	893	1,374	
		평균	1,873	1,932		
2	제1서진호	00	2,654	2,622	1,810	2,051
		01	2,105	2,090	1,479	
		02	1,429	1,402	962	
		평균	2,063	2,038		
3	제88건양호	00	2,873	2,871	-	2,238
		01	2,357	2,560	-	
		02	1,399	1,367	-	
		평균	2,209	2,266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과학원 자료는 대상 어업인들이 속한 선박의 책임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어업인들의 연도별 어획량에 대한 변동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와 관련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원양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최근 5년간 척당 평균된 연간 어획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4.2>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척당 평균 어획량 추이(1998 - 2002)

(단위 : 톤)

자료: 원양협회(www.kodefa.or.kr/data/statistics)

연도 업종	'98	'99	'00	'01	'02	비고
오징어 채낚기	830	2,715	1,815	1,499	1,130	

<표 4.2>에서 보면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어획변동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표 4.1>에 나타낸 평균연간어획량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4.3 요약 및 결론

조사대상 선박의 평균 연간 어획량은 <표 4.1>에 나타낸 바와 같다.

## 제5장 평균연간생산액

### 5.1 서론

본 장에서는 어획물 판매단가를 구하여 연간평균생산액을 산출한다. 추정된 조사대상 어업인들의 평균연간 어획량과 어획물 판매단가를 이용하여 어업손실보상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평균연간생산액을 산출한다.

### 5.2 자료 및 방법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균 연간생산액은 <표 4.1>에 제시된 어업인별 평균연간어획량에 오징어 어종의 평균 연간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본 연구자들은 <표 5.1>에서 제시한 어획물의 규격 조성비를 고려한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다.

### 5.3 결과 및 논의

#### 5.3.1 어획물 조성

어획물의 평균연간판매단가의 추정을 위하여 대상 어업인의 선적항이 있는 부산시 수협, 부산 공동어시장 및 원양협회로부터 판매자료를 입수하여 어획물 kg당 판매단가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조회결과 부산시 수협 및 부산공동어시장에는 최근 3년간의 오징어 어종의 위판 실적이 없었다.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은 수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어획량 전부를 수출 또는 사매매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획물 조성비는 어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획물 판매단가에 앞서서 대상 어업인의 판매실적 증빙 자료에 의거, 평균연간판매단가 산정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의 오징어 어종의 규격별 판매 실적량에 대한 조성비를 구하여 <표 5.1>에 나타내었다. <표 5.1>에서 보면 규격 M과 S의 조성비가 각각 33%, 34%를 차지했고 그 나머지는 8 - 16% 범위로 조성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판매단가의 평가시점에서 보면 비교적 중간 또는 소형 오징어의 어획 비율이 높았음을 나타낸다.

<표 5.1> 조사대상 선박의 규격별 판매물 조성(2002.9 - 2003.8)

(단위 : 톤)

어 선 명	규 격	판 매 량	선박별 조성비	3척 평균조성비		
				규격	총량	평균조성비
제39동방호	2L	131	0.07	2L	451	0.09
	L	246	0.13			
	M	1,027	0.55			
	M2	169	0.09			
	S	281	0.16	L	867	0.16
	계	1,854	1.0			
제1서진호	2L	115	0.08	M	1734	0.33
	L	114	0.07			
	M	134	0.09			
	M2	137	0.09			
	S	1,014	0.67	M2	418	0.08
	계	1,514	1.0			
제88건양호	2L	205	0.11	S	1,769	0.34
	L	507	0.27			
	M	573	0.31			
	M2	112	0.06			
	S	474	0.25			1.0
	계	1,871	1.0			

### 5.3.2 평균 연간 판매단가

평균연간판매단가의 산출기준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수산물별 평균판매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II. 나). 따라서, 본 용역의 판매단가 산출기준 연도는 2002년이다.

평균판매단가의 변동 추이를 보기 위하여, 원양협회에서 제출한 오징어의 최근 5년간 월별판매 단가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지난 5년간 평균 판매단가는 변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징어의 전체 어획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원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2002.08 - 2003.7)의 판매 단가는 산술평균하면 1,302원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중간에 해당하며, 대체로 연도별 추이는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어획량의 증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02년도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하여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대상 어업자들의 어획량도 2001년에 비하여 상당히 부진하였다. 2002년 오징어 어획량은 2001년에 비하여 어업자들간에 차이가 있으나, 약 30~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획량 감소에 비하여서는 어가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양협회 자료에서는 규격별 단가가 추계되어 있지 않아, 규격별 단가는 알 수 없었다.

<표 5.2> 오징어의 최근 6년간 월별 판매단가 추이

(단위 : 원/kg)

년도 월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	764	1,182	900	913	1,037	1,336
2	1,077	1,182	957	1,050	1,110	1,344
3	1,037	1,234	728	1,003	1,134	1,310
4	913	1,114	699	967	1,130	1,278
5	882	1,025	689	1,033	1,466	1,296
6	951	881	713	1,088	1,343	1,296
7	1,084	854	784	1,052	1,381	1,324
8	1,168	886	868	1,067	1,269	-
9	1,057	872	995	1,060	1,282	-
10	1,043	823	943	1,180	1,289	-
11	1,137	836	885	1,164	1,278	-
12	1,295	858	954	1,261	1,320	-
년평균단가	1,034	979	843	1,070	1,253	1,312

\* 자료 : 원양어업협회(2003년)

<표 5.2>의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는 연도별로 큰 변동이 없으므로 사용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표 5.1>에서 본 바와 같이 오징어의 단가는 규격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표 5.1>과 같이 규격별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실제적 판매단가의 추정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 5.3>에서는 어업자들이 제출한 어획량 및 판매금액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성비를 구한 후, 규격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단가를 평균 판매단가로 하였다. 이렇게 산정한 판매단가를 원양협회에서 추계한 판매단가와 비교하여 본 결과 원양협회의 판매단가가 145원정도 높았다. 그러므로, 원양협회의 판매단가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근거가 빈약하여 신뢰성이 낮으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5.3> 조사대상 어업인 평균 연간 판매단가

(단위 : 원)

오징어 규격	총판매량 (kg)	총판매금액 (천원)	규격별 판매단가	조성비	산정 단가	원양협회	비고
2L	450,310	916,316	2,035	0.09	1,157	1,302	
L	866,370	1,330,371	1,536	0.16			
M	1,735,136	1,806,644	1,041	0.33			
M2	417,908	441,951	1,057	0.08			
S	1,769,716	1,564,227	884	0.34			
총계	5,239,440	6,059,509		1.0			

### 5.3.3 평균연간생산액

조사대상 어업인의 평균연간어획량과 평균단가를 근거로 어업인별 평균연간생산액을 구하여 <표 5.4>에 나타내었다.

<표 5.4>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균연간생산액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허가업종	평균연간량 (M/T)	평균연간판매단가 (원/kg)	평균 연간생산액 (천원)
1	윤학수	제39동방호	오징어 채낚기	1,903	1,157	2,201,771
2	장지선	제1서진호	오징어 채낚기	2,051		2,373,007
3	정두열	제88건양호	오징어 채낚기	2,238		2,589,366

#### 5.4 요약

이상에서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균 연간생산액은 <표 5.4>와 같다.

## 제6장 평년 어업수익액

## 6.1 서론

본 연구는 어업처분 보상의 기초가 되는 어업수익률과 어업수익액을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년어업경비를 산정하여, 이 경비를 제5장에서 산출된 평균연간생산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6.2 자료 및 방법

### 6.2.1 감척사업의 비용항목 및 산출기준

수산업법 제 81조에 근거한 어업처분에 의한 보상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평년수익액은 앞장에서 산출한 평균생산액에서 본 장의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원양어업의 경우, 어획물 전량을 수협을 통한 판매 즉 소위 계통판매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출하거나, 본국으로 반입한 어획물은 냉동창고 등에 보관한 후 어가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회사와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위 비계통판매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업경비는 고가의 어업장비설치 또는 유류 구입실적 등 모든 구입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추정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평년어업경비는 조사대상 어업인이 제출한 어업경비명세(세무서 발행 손익계산, 어업 경비 등), 면접조사와 현장 확인조사, 각종 어업경비지출 증빙서 확인조사와 보완자료로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간한 어업경영조사보고, 해양수산통계년보와 수산년감 및 동 업종의 기존 보고서 등의 각종 문헌을 참고로 하여 산출하였다.

### 가. 비용항목의 설정

일반기업의 생산비용은 크게 자본적 경비와 운영경비로 나누어진다. 어업경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본 장에서는 어업의 특수성 및 기타 어업과의 비교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근해 어업비용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묶음을 약간 달리하여 크게 조업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노무비 및 영업외 비용 등) 2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조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어구비, 입어료, 연료비, 용기대, 소모품비, 주부식비, 복리후생비, 수리비 등이고 임금 및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임금,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판매비, 저장비, 조세공과, 기타 잡비 등이며 감가상각비는 조업비에 포함시켰다. 어업경영조사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각 항목의 구체적 분류기준은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년 어업 경비명세표는 어업경영조사보고의 항목 분류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어업인 개인별로 작성하였다. 특히 원양어업에서만 지급되는 입어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산정하였다.

<표 6.1> 어업비용 항목의 분류기준

항 목		분 류 기 준	
어업비용	조업비	어구비	① 어구의 신규수입, 망지, 로프, 부자, 침자, 보망사, 꼴탈등 어구 소모품 구입비 ② 조립 및 수리관리비
		연료비	① 중유, 경유, B/A유, 윤활유 등 선박운용을 위한 유류구입비 ② 취사 및 난방용 유류구입비
		용기대	① 목상자, 지상자, 바구니 등 어획물의 선내저장, 관리 및 판매를 위한 용기 구입비 ② 용기제작 및 수리관리비
		저장비	① 얼음, 소금 구입대금 ② 냉동 및 냉장료
		소모품비	① 전구, 청소용구, 못,식도 등 선박소모품 ② 장갑, 휴지 등 선원소모품 ③ 어구비, 수리비, 주부식비에 포함되지 않은 제물품구입비
		주부식비	① 쌀 ② 쇠고기, 김치, 야채, 조미료 ③ 식수
		후생비	① 선원주대 ② 치료비 및 약품대 ③ 연초대
		수리비	① 선체, 기관, 선박기기 관리 및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 ② 선체수선 인부임금 ③ 상가비, 기관수리비 등 외부수리대금
	감가상각비	어선, 육상시설등 어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단, 어구는 감가상각비 대상에서 제외	
	임금 및 일반관리비	선원임금	① 고정금 ② 짓가림액 ③ 상여금 ④ 퇴직금 ⑤ 특별수당등 선원에게 지급한 임금. 육상노무자 임금포함
		사무비	① 사무용소모품비 ② 사무원급료 ③ 사무실임대료 및 관리비 ④ 통신비 ⑤ 교통비 ⑥ 기타 사무용 경비
		공제 및 보험료	① 어선공제 및 보험료 ② 선원공제 및 보험료
		판매비	판매수수료, 육상운반비, 하역비 및 광고선전비 등
		조세공과	① 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② 어선 출입항 수속비, 조합비 등 공과금
		기타관리비	① 용선, 차선료, 검사료 (선박, 생산물), 선원훈련비 등 비정기 지출 ② 출어제비용(입어료 등) ③ 상기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잡지출(영업외 비용, 이자등)
어업이익		총어업수입-총어업비용	

\* 자료출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2002)참고

## 나. 비용계산방법

각 항목별 비용은 세무서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등과 어업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취업규칙, 면접조사, 현장 확인조사 및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된 평균 수량에 유사경비내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Ⅱ와 관련한 평년 어업 경비는 평가시점 현재 해당 어업의 연간 어업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뜻한다. 본 조사에서는 평가 시점을 2002년9월에서 2003년 8월로 보며, 어업경비의 항목별 성질상 평가시점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은 3년 평균한 표준경비 또는 항목별 비중을 참고하여 평균액 또는 실비는 물가지수(농림수산물 2003년 8월 현재 112%, 한국은행 자료)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대상 어업인들의 어업경비의 대략적인 규모 및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총경비 내역 및 평년 어업경비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6.2>와 같다.

## 1) 조업비

### ① 어구비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어구는 집어등, 자동조상기, 오징어 낚시 등이 있는데, 내구년수가 짧아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다. 어구비는 생산매출액의 비중을 참고하여 일률 적용하였다.

### ② 입어료

입어료는 원양어선이 대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이다. 어업자들이 제출한 경비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실비를 그대로 계상하였다.

### ③ 연료비

연료비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서 조업일수, 선적지 및 조업어장, 엔진마력 수 등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어업인으로부터 제시된 어업인들의 유류공급실적을 기초로 하였고(<표 6.2>), 이를 1일 평균 연료비를 구하여 선박별로 적용하였다.

### ④ 소모품비

본 어업경비 항목은 생산액에 따라서 변동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비율에 따라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업인이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토대로 <표

6.2>에서 제시된 3년간의 평균치에 대한 생산액 대비 비율을 참고로 하여 일률 적용하였다.

#### ⑤ 주부식비

주부식비는 1인 1일 3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평균조업일수 및 조업인원수를 기초로 하였다. 조사된 어선의 선원 취업규칙 의견서와 선별 어로계약서에 명시된 선내급식 항목에는 「선내급식은 1일 1인 7,800원 기준으로 공급한다」라고 계약되어 있다. 그리고 선원수는 대체로 26명 정도이다. 선원수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업시에만 현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통상의 항해시에는 10명 정도의 한국인 선원만 승선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어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금액과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선박별로 계상하였다.

#### ⑥ 복리후생비

이 경비는 임금협정서 또는 어로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어업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평균하여 얻은 <표 6.2>를 참고로 하여 생산액의 1%를 일률 적용하였다.

#### ⑦ 수리비

수리비는 선체는 물론 선박의장품 및 기관수리 또는 교체 등으로 연도별 비용에 변동이 심한 항목이다. 또한 선박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나 선박의 정기적 또는 임시검사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선박이든 3년이란 기간동안 수리비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업인이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와 현장 조사시 확인한 어선 및 어업장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표 6.2>의 평균액을 적용하였다.

#### ⑧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이미 조사대상 선주들이 선체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시에 제출한 선체, 기관 및 각종 어업장비 등에 관한 자료 및 실제 확인조사를 기초로 하여 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기 조사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6.2> 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평균 총경비율(2000~2002)

(단위 : 천원)

구 분	2000	2001	2002	평균	
조업비	어구비	71,680	88,635	87,204	82,506 (0.049)
	입어료	205,690	241,185	234,882	227,252 (0.136)
	연료비	227,846	270,738	199,970	232,851 (0.139)
	소모품비	51,206	42,404	48,735	47,448 (0.028)
	주부식비	33,668	44,152	36,878	38,233 (0.023)
	복리후생비	13,400	12,300	8,800	11,500 (0.007)
	수리비	98,402	206,154	139,555	148,037 (0.088)
	감가 상각비	111,015	115,015	119,015	115,015 (0.069)
임 금 및 관리비	임금	266,336	209,295	154,154	209,928 (0.125)
	사무비	89,339	74,491	76,931	80,254 (0.048)
	공제 및 보험료	27,782	42,277	36,566	35,542 (0.021)
	저장비 및 판매비	627,253	314,979	199,486	380,573 (0.228)
	조세공과	32,497	9,136	6,481	16,038 (0.01)
	기타	49,006	41,089	54,939	48,345 (0.029)
비용 총계	1,905,120	1,711,850	1,403,596	1,673,522 (1.000)	
수입 총계	2,230,216	1,872,154	1,197,552	1,766,641	
경비율(%)	85.4	91.4	117.2	94.7	

\* 자료 : 조사대상 어업인 제출

## 2) 임금 및 관리비

### ① 임금

어업 경비 중 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지출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선에는 우리나라 선원과 외국인 선원이 혼승하여 조업하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임금은 기본급과 어획량에 따라 지급하는 비율급(보합급)으로 구성된다. 임금에는 기본급, 보합급, 외국인 선원 임금, 전제비, 퇴직금, 어기 수당, 외국인 선원을 외국에서 승하선에 따른 왕복 항공료 등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표 6.2>의 비율(12.5%)은 2002년도 동 업종의 기존 조사 자료보다 적은 비율로 판단되어 기존의 임금 비율(17.0%)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 ② 사무비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부산 남포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사무비가 다를 수 있으나 선박별 큰 변동이 없으므로 평균액을 계산하여 계상하였다. 여기에 자가노임비, 대리점 수수료 등을 포함하였다.

### ③ 선원공제비 및 보험료

어업인이 제출한 실제 지출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 ④ 저장비 및 판매비

원양 오징어어업에서는 본선은 어장에서 계속하여 조업하면서 어획물은 운반선을 통하여 운반하고, 어획물은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판매하므로, 경비 중에서 운반비 및 저장비가 다른 어업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항목에는 <표 6.1>처럼 운반비, 하역비, 저장비 및 광고선전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경비는 총 매출액과 연계되므로 <표 6.2>의 비율을 참고하여 일률 계상하였다.

### ⑤ 조세공과

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어선출입항 수속비, 조합비 등의 공과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균값을 산정하여 이를 적용하였다.

⑥ 기타 잡비

선원훈련비 및 기타 항목에 잡히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서 자료 또는 어업인 진술자료를 기초로 하여 <표 6.2>의 평균액을 일률 적용하였다.

<표 6.3> 제39동방호(윤학수) 평년어업수익 명세표

(단위 : 천원)

항 목	단 가	수 량	연간비용	비 고
<b>I. 조업비</b>	<b>조업개월수</b>	<b>7.0개월</b>		
1.어구비		총매출액의 4.6%	101,281	
2.입어료		실 비	254,522	
3.연료비		1,087천/일소모액*조 업일수	226,821	
4. 소모품비		총매출액의 2.7%	59,448	
5.주부식비		8,736원/일/인*조업 일수	47,396	
6.복리후생비		총매출액의 1%	22,018	
7.수리 비		평균액	165,801	
8.감가상각비	감정평가금액		120,382	
소 계			997,669	
<b>II.임금 및 관리비</b>	<b>월평균 조업인원</b>	<b>26명</b>		
1.임금		실 비	352,283	고정급+비 율급
2.사무비		평균액	89,884	
3.공제 및 보험료		“	39,807	
4.저장비 및 판매비		총매출액의 22%	484,390	
5.조세공과		실 비	7,259	
6.기타 등		평균액	54,146	
소 계			1,027,769	
<b>총 경 비</b>			<b>2,025,438</b>	
<b>총매출액</b>			<b>2,201,771</b>	
<b>총어업수익</b>			<b>176,333</b>	

<표 6.4> 제1서진호(장지선) 평년어업수익 명세표

(단위 : 천원)

항 목	단 가	수 량	연간비용	비 고
<b>I. 조업비</b>	<b>조업개월수</b>	<b>7.7개월</b>		
1.어구비		총매출액의 4.6%	109,158	
2.입어료		실 비	254,522	
3.연료비		1,087천/일소모량 *조업일수	250,010	
4. 소모품비		총매출액의 2.7%	64,071	
5.주부식비		8,736원/일/인*조 업일수	52,241	
6.복리후생비		총매출액의 1%	23,730	
7.수리비		평균액	165,801	
8.감가상각비	감정평가금액		112,866	
소 계			1,032,399	
<b>II.임금 및 관리비</b>	<b>월평균 조업인원</b>	<b>26명</b>		
1.임금		실 비	403,411	고정급+비율 급
2.사무비		평균액	89,884	
3.공제 및 보험료		“	39,807	
4.저장비 및 판매비		총매출액의 22%	522,062	
5.조세공과		실 비	7,259	
6.기타 등		평균액	54,146	
소 계			1,116,569	
<b>총 경 비</b>			<b>2,148,968</b>	
<b>총매출액</b>			<b>2,373,007</b>	
<b>총어업수익</b>			<b>224,039</b>	

<표 6.5> 제88건양호(정두열) 평년어업수익 명세표

(단위 : 천원)

항 목	단 가	수 량	연간비용	비 고
<b>I. 조업비</b>	<b>조업개월수</b>	<b>7.9개월</b>		
1.어구비		총매출액의 4.6%	119,111	
2.입어료		실 비	254,522	
3.연료비		1,087천/일소모액 *조업일수	256,170	
4. 소모품비		총매출액의 2.7%	69,913	
5.주부식비		8,736원/일/인*조 업일수	53,528	
6.복리후생비		총매출액의 1%	25,894	
7.수리비		평균액	165,801	
8.감가상각비	감정평가금액		123,917	
소 계			1,068,856	
<b>II.임금 및 관리비</b>	<b>월평균 조업인원</b>	<b>26명</b>		
1.임금		실 비	440,192	고정급+비율 급
2.사무비		평균액	89,884	
3.공제 및 보험료		“	39,807	
4.저장비 및 판매비		총매출액의 22%	569,661	
5.조세공과		실 비	7,259	
6.기타 등		평균액	54,146	
소 계			1,200,949	
<b>총 경 비</b>			<b>2,269,805</b>	
<b>총매출액</b>			<b>2,589,366</b>	
<b>총어업수익</b>			<b>319,561</b>	

### 6.3 결과 및 논의

대상 어업인이 제출한 자료(세무서 어업경비 증빙자료 또는 기타 제출자료)에 의한 어업경비의 평균 총 경비내역은 <표 6.2>에 나타내었다. 이들 자료에서 미비한 항목은 기존의 오징어 채낚기 경비자료를 보충하여 선박별 어업경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선박별로 <표 6.3>~<표 6.5>에 나타내었다.

평년수익액은 제5장에서 산출된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균연간생산액에다 본 장에서 계산된 조사대상 어업인의 개인별 평년어업경비를 제하여 산출한다.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년수익액을 산출하면 <표 6.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6> 조사대상 어업인의 개인별 평년수익액

(단위 : 천원, %)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평균 연간생산액 (천원)	개인별평균 어업수익율	평년수익액	평균어업수익율
1	윤학수	제39동방호	2,201,771	8.01	176,333	10.05
2	장지선	제1서진호	2,373,007	9.44	224,039	
4	정두열	제88건양호	2,589,366	12.34	319,561	
합 계			7,164,144		719,933	

### 6.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조사대상 어업인들이 평년수익액을 산출한 결과는 <표 6.6>과 같다. 조사대상 어업인들의 평년수익액은 2002년도 조사평가된 것보다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이 현상은 평가 대상연도가 다르므로 인한 어획량의 차이로 보아진다.

## 제7장 폐업지원금 산정

### 7.1 서론

2003년 원양어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 감척의 대상 선박 3척에 대하여 폐업보상 평가지침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6장에서 산출된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년수익액을 기초로 동 지침에 의거하여 폐업지원금을 산정한다.

### 7.2 자료 및 방법

폐업지원금은 <표 6.6>에 제시된 조사대상 어업인별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산출한다.

### 7.3 결과 및 논의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조사대상 어업인별 폐업지원금은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7.1> 조사대상 어업인의 평년수익액 및 폐업지원금

(단위 : 천원)

연번	어업인명	어선명	업종	평년수익액	폐업지원금	비고
1	윤학수	제39동방호	원양 오징어 채낚기	176,333	528,999	
2	장지선	제1서진호	원양 오징어 채낚기	224,039	672,117	
3	정두열	제88건양호	원양 오징어 채낚기	319,561	958,683	
3 척 합 계				719,933	2,159,799	

### 7.4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본 조사대상 어업인별 폐업지원금은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제8장 종합논의 및 결론

원양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오징어 채낚기어업 감척 폐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출용역은 해양수산부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간에 체결된 용역 계약서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대상어업인의 최근 3년간 연간 평균수익액을 추정하였다.

본 용역은 허가어업인 원양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어선 3척에 대해 산출하였으며, 이 중 통손보상액(시설물 잔존가액)을 제외한 대가 보상액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로서 평년수익액을 추정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평년수익액의 3년분으로 계상된 대가보상액을 계산하면 <표 7.1>과 같다.

대상 선박의 실제 생산량 추정과 어업경비는 관련된 서류, 기존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원양어선의 경우는 연근해 어업에서 갖추지 못한 증빙서류가 거의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본 용역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조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감척대상 어업인들은 적극적으로 근거있는 서류를 통하여 증빙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3척의 선박 모두 성실히 조업하여 전체 원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중간정도의 어업수익율을 나타내고 있다.

## 참고문헌

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 연구소. 2001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 지원사업 폐업지원금 산출조사용역 보고서. 2002.3
2. 대화감정 평가법인. 감가 상각비
3. 한국원양협회([www.kodefa.or.kr/data/statistics](http://www.kodefa.or.kr/data/statistics))
4. 한국 원양 어업협회. 2000년도 원양어업 통계연보 제 20집
5. 한국 원양 어업협회. 2001년도 원양어업 통계연보 제 21집
6. 한국 원양 어업협회. 2002년도 원양어업 통계연보 제 22집
7. 한국 원양 어업협회. 2003년도 원양어업 통계연보 제 23집(인쇄중)
8. 외항선 출입항 신고. 부산광역시.
9.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주요 수산물 편람. 2002
10.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업경영 조사보고. 2002
11. 기타 오징어 채낚기어업 자료.
12. 해양수산부. 2002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꽁치붕수망어업 및 오징어채낚기 어업 감척 폐업 보상 평가용역(최종보고서). 2002
13. 한국은행자료([www.kiep.or.kr/f/f-2\(2000\).html](http://www.kiep.or.kr/f/f-2(2000).html)).

# 회계 확인서

본 용역보고서의 회계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3. 09

확인자: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인